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8월 23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# 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’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 정비(안 제2조)
  -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
- 나.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정비 (안 제4조)
  - 「지방공무원법」의 징계시효 기준에 맞춰 정비
- 다.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한 보상금 환수규정 정비 (안 제10조)
- 라. 그 밖에 법제처의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정비 (안 제12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(참조 : 감사담당관)
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정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120-70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

※ 기타사항 문의 : 전화 02-3140-8049, 팩스 02-330-1565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』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 내용	의 건	비 고